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우리CS 프런티어 알파 혼합 10 투자회사 제3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CS 프런티어 알파 혼합 10 투자회사 제3호 주식의 인수청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회사 명 우리CS 프런티어 알파 혼합 10 투자회사 제3호

2. 자산운용회사명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명

판 매 회 사 명	주 소	상담가능 전화번호
홍콩상하이은행 (HSBC) 서울지점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1588-1770

※ 판매회사는 투자회사 주식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회사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성기준일 2007년 6월 26일

5. 투자설명서의 비치·공
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
주소 판매회사 영업점 및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주) 홈페이지 <http://www.wcsam.com>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의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회사 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약 (핵심설명서)】

- I. 투자회사 의 개요
 1. 상호
 2. 회사존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운용전문인력
 6. 투자실적 추이
- III. 매입·환매 관련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매입·환매 절차 등

【투자설명서 본문】

제1부. 투자회사의 기본정보

- I. 투자회사 의 개요
 1. 상호
 2. 회사의 존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립일 등 연혁
 6. 자본금 추이
 7. 해산사유
-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투자실적
 -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나. 연평균 수익률
-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주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회사 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IV. 주식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 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II. 자산보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4부. 주주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주주의 권리

1. 주주 총회, 이사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1. 정기보고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핵심설명서)

I 투자회사의 개요(본문 6 쪽)

1. 명 칭 : 우리 CS 프런티어 알파 혼합 10 투자회사 제 3 호
2. 회사의 존립기간 : 최초 설립일로부터 투자회사 해산일까지
3. 종 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혼합형, 추가형, 개방형
4. 자산운용회사 :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본문 6~7 쪽)

구 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투자회사 자산을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공모주등의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혼합형 투자회사 - 다만, 이 투자회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 투자전략	- 투자회사는 주식에 회사자산총액의 10%이하를 투자하며, 채권(신용평가등급 AA- 이상의 채권)에 40%이상을 투자할 계획 - 주식 편입시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것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것에 투자하며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주식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후 대량거래 및 상승 둔화시 매도하여 주가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최소화 -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회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회사의 주식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투자회사의 재산을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회사 주식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3등급으로 다소 높은 위험수준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투자회사 주식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tmc.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기준:2007.3.31 기준)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간접투자기구수	다른운용자산규모	
최창훈	37	팀장	31<팀 공동>	4,857<팀 공동>	- 서울대학교 경제학교 - LG 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1 팀 - 현,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주식운용1 팀장

* 이 투자회사의 운용은 주식운용1 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 : 해당사항 없음

III 매입·환매 관련정보(본문 8~12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주주가 부담하는 비용	선취판매수수료	-	-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기타	-	-	
	합계	-	-	
투자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	자산운용회사보수	연 1,000분의 3.6	3개월 단위	-
	판매회사보수	연 1,000분의 8.0		
	자산보관회사보수	연 1,000분의 0.3		
	사무관리회사보수	연 1,000분의 0.6		
	기타비용1)	연 1,000분의 0.2 (자본금150억 기준)	사유발생 시	
	총보수.비용비율2)	연 1,000분의 12.7	-	

1)유가증권 거래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과거 실적의 추정치임.

기타비용내역-[설립비용+기타잡비(서류발송비,계좌개설용인감증명서발급비,자산운용보고서 인쇄 및 발송비용)+청산비용(1년 운용후 청산시 적용)]

2)지출되는 보수 및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3.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7.3.31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매입·환매절차

이 투자회사의 주식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 시~오후 4 시 30 분)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D+1 자금납입(5시이전) 주식 매입(D+1기준가격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D+1 D+2 자금납입(5시이후) 주식 매입(D+2기준가격용)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D D+1 D+2 D+3 환매청구(5시이전) 기준가격용일 환매금실수령일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5 영업일(D+4)에 환매대금을 지급 D D+1 D+2 D+3 D+4 환매청구(5시이후) 기준가격용일 환매금실수령일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투자설명서 본문참조)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는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회사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접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 (고객 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연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 본문 >

제1부. 투자회사 의 기본정보

I. 투자회사 의 개요

- | | |
|---------------|--|
| 1. 상호 | 우리CS 프린티어 알파 혼합 10 투자회사 제3호 |
| 2. 회사의 존립기간 | 최초설립일로부터 투자회사 해산일까지 |
| 3. 종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혼합형, 추가형, 개방형 |
| 4. 자산운용회사 |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주) |
| 5. 최초설립일 및 연혁 | 2007.6.26 우리CS 프린티어 알파 혼합10 투자회사 제3호 설립 |
| 6. 자본금 추이 | 최초설립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 7. 해산사유 | ①정관에 정한 존속기간 만료 및 그 밖의 해산사유 발생
②주주총회의 결의
③합병
④파산
⑤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⑥금융감독원의 등록취소 |

II. 투자정보

- | | |
|------------|--|
| 1. 투자목적 | 이 투자회사는 채권 및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는 혼합형투자회사로서 주주는 채권 및 주식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 2.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회사는 주식에 회사자산총액의 10%이하를 투자하며, 기타 채권에 40%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식 편입시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것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것에 투자하며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주식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후 대량거래 및 상승 둔화시 매도하여 추가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최소화합니다.
<u>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회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u> |
| 3. 주요 투자위험 | 이 투자회사 의 주요 투자위험은 아래와 같으며,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14page)'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 가.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 라. 유동성 위험
- 마. 기타 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회사는 AA- 등급 이상의 채권 및 A2-등급 이상의 어음 등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확보하면서,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것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것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주식등에의 편입비가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30%이하로서 5단계의 Level 중 Level 3에 해당하는 투자위험(투자수익의 변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채권 및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이해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회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투자위험 등급 분류

구분	위험평가 점수	해당 펀드(예시)
Level 1	20점 미만	이머징 주식/채권투자, 부동산 개발형/임대형
Level 2	20점 이상	주식형(성장형), 주식혼합형(비적격채권), 주식인덱스형
Level 3	40점 이상	주식혼합형(적격채권), 채권혼합형(회사채이상), ELF(일반형), 부동산 PF형
Level 4	60점 이상	채권형(비적격채권), 채권혼합형(국공채이상), ELF(원금보존추구형)
Level 5	80점 이상	MMF, 채권형(적격채권), 국제 우량채권형(국제신용평가등급 A이상)

※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가장 위험이 높아 위험평가점수가 낮은 Level 1에서 위험평가점수가 높은 Level 5까지 5단계로 펀드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펀드 유형별 수익률 변동성에 근거하여, 해당 펀드 유형별 시장위험평가를 6단계, 편입채권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인도에 따라 신용평가를 5단계, 편입자산의 유동화정도에 따라 유동성평가를 5단계로 구분하고 사전에 정해진 배점표에 따라 각각의 위험평가점수를 계산한 후 합산하고 위험조정치를 반영하여 위험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5. 기준가격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총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산정주기	매일 산정
공시시기	판매회사의 영업개시 시간 전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 자산운용회사(http://www.wcsam.com) · 판매회사 ·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의 인터넷 홈페이지

6. 운용전문인력

(2007.3.31기준)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최창훈	37	팀장	31 <팀 공동>	4,857 <팀 공동>	- 서울대학교 경제학고 - LG 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1팀 - 현,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주식운용1팀장

* 이 투자회사의 운용은 주식운용1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회사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의 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연도별 수익률 추이

최초설립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연평균 수익율

최초설립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주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 시기	비고
주주가 부담하는 비용	선취판매수수료	-	-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기타	-	-	
	합계	-	-	

2.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 시기	비고
투자회사 가 부담하는 비용	자산운용회사보수	연 1,000분의 3.6	3개월 단위	-
	판매회사보수	연 1,000분의 8.0		
	자산보관회사보수	연 1,000분의 0.3		
	사무관리회사보수	연 1,000분의 0.6		
	기타비용1)	연 1,000분의 0.2 (자본금150억 기준)	사유 발생 시	
	총보수,비용비율2)	연 1,000분의 12.7	-	

1)유가증권 거래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과거 실적의 추정치임.
기타비용내역-[설립비용+기타잡비(서류발송비,계좌개설용인감증명서발급비,자산운용보고서 인쇄 및 발송비용)+청산비용(1년 운용후 청산시 적용)]

2)지출되는 보수 및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만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	38	64	127

주)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투자회사에서 납부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 받게 되므로 투자회사는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2) 주주에 대한 과세 주주는 투자회사가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등(2007.4.6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기타 유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일(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설정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한 외국상장주식(뮤추얼펀드, ETF, REITs 등 외국간접투자기구의 주식은 제외)의 매매 또는 평가 손익은 현행의 국내상장주식 평가손익의 비과세 조치와 같이 거주자의 과세상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익을 제외하고 과세소득이 계산되기 때문에, 투자한 외국상장주식의 가치하락으로 투자신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산 또는 환매시점에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 소득]

- (1) 채권이자, 주식의 배당소득, 비상장주식 평가차익 등과 같은 다른 자산의 이익부분과,
 (2) 법시행일 이전에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및 매매 차익 발생 이익 ("2)"는 법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투자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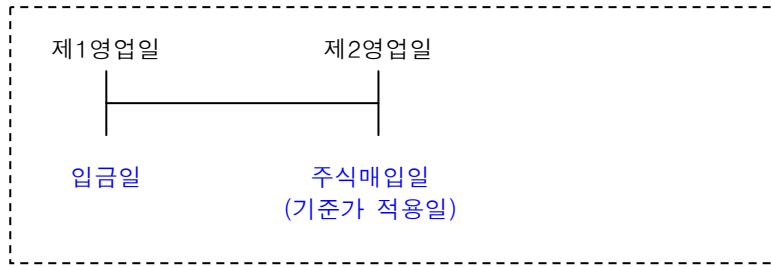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IV. 주식의 매입·환매,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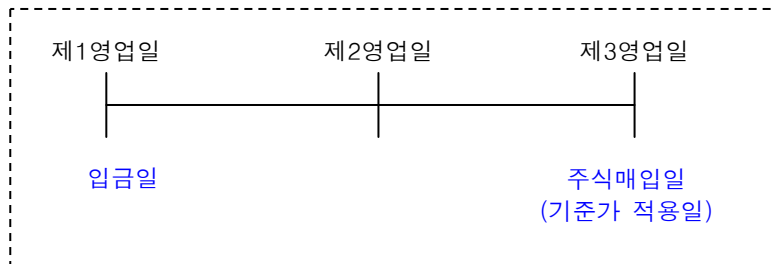
1. 매입

- ①이 투자회사의 주식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청구하거나 인터넷에서 온라인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②주식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회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투자회사 최초설립일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주식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1) 17시[오후5시] 이전에 납입시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납입시



주1) 주식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의 기준시간(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주2)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 투자회사 주식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투자회사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환매

주주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환매의 청구

- ① 주주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주주가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관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회사에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④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⑤ 실질주주가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⑥ 현물보유주주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주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환매가격 및 환매 방법

- ① 주식의 환매가격은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주주의 경우 정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주식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②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주주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③ 판매회사(정관 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 ④ 환매대금은 투자회사 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회사 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회사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식 환매시 적용기준가격 및 환매금의 실수령일>

(1) 주주가 17시[오후5시] 이전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4영업일**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주가 17시[오후5시] 이후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5영업일**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 5)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정관 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주주가 그 주식을 보유한 기간(당해 주식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회사재산에 편입합니다.

①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4) 주식의 환매 제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17시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5) 주식의 환매 연기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회사(자산보관회사를 포함한다)가 정관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주식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투자회사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1) 분배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결산 분배금 지급의 경우에는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그 소유 또는 질권 등록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③ 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④ 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지급일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배금은 순자산총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내로 합니다

2) 분배금등의 소멸시효 등

- ① 회사의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 ② ①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산분배금 및 청산분배금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3) 이익분배금에 의한 투자회사 주식 매수

- ① 주주는 현금으로 분배된 이익분배금에 대한 특정 약정이 없는 경우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회사 주식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익분배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주식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주식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정관 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 투자회사 주식의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2부. 투자회사 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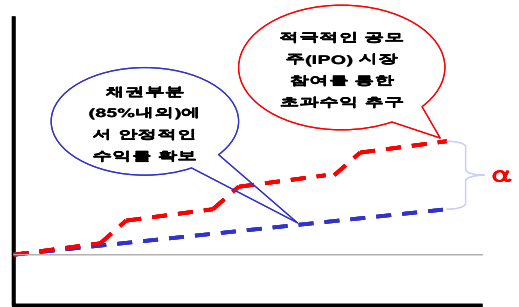
1. 투자전략 가. 투자전략 개요

이 투자회사는 주식에 회사자산총액의 10%이하를 투자하며, 기타 채권에 40%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식 편입시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것과 주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것에 투자하며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주식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후 대량거래 및 상승 둔화시 매도하여 주가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회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투자전략

① 상품의 특성

- 안정적 수준의 자본차익 및 금리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
- 일반적으로 함인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공모주 편입으로 고수익 추구
- 상장 후 하방경직성을 유지하여 안정적 수익 추구
- 뮤추얼펀드는 단독으로 공모주를 매정받아 추가수익률 확보 가능



② 운용전략

1) 주식 운용전략

- IPO 주식들에 대한 등록 프리미엄
- 사전 철저한 분석에 따른 선별적 집중 투자
- 기타 시장기회를 활용한 수익률 제고

2) 채권운용전략

1st Step	2nd Ste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전망 / 전략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전망 ■ 중립 듀레이션 결정 ■ 채권 Universe 결정 ■ 위험허용한도 조정 : Trading Rule 수립 	<p style="text-align: center;">포트폴리오 구축 / 자산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e Position 비중 결정 ■ Spread Analysis로 저평가 섹터 선정 ■ Credit Analysis로 Exposure 종목 선정 ■ PMO를 활용한 Simulation을 통해 최종 포트폴리오 구축 및 자산배분 결정 - 펀드 Stress Test, 만기구조 등 Simulation
3rd Step	4th Step
<p style="text-align: center;">초과수익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uration 조절 - 금리에측, System Trading에 의한 Duration 조절 ■ Spread Trading - 장단기 Spread를 이용 종목간 Spread - 바벨/블릿 상대적 성과를 이용한 Spread 	<p style="text-align: center;">Monitoring / 재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상황 검토 및 포트폴리오 조정 여부 Check

2.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회사 주식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주주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회사주식은 투자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	이 투자회사 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므로 환매청구시와 환매지급일의 순자산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회사의 주식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주식	10% 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채권	40% 이상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어음	40% 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증정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④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⑥수익증권 등	5%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주식,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주식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10%임

⑦투자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투자증권 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⑧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 상품	10%이하 (위탁증거금)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⑨환매조건부채권매도	50%이하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합니다.
⑩투자증권의 차입	회사자산총액의 20%이하	법시행령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증권을 차입하는 것
⑪은행계정대		-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 주식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⑫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위의 ①~⑤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4,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회사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회사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회사 해산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회사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 사항
투자비율 제한에 관한 사항	<p>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산보관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2조 제7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합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p>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회사 의 설정일로부터 매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6.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회사 재산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p> <p>7.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8. 투자회사 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p>특수관계인 및 주주에 관한 사항</p>	<p>* 이해관계인이란 법시행령 제77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함.</p> <p>-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p> <p>② 투자회사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 투자회사 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정관 제52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정관 제53조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③ 투자회사 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은 정관 제52조제1항제8호, 정관 제53 조 제1항제2호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II. 자산의 평가

1. 자산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①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2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비상장채권(②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자산유동화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⑥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발표하는 가격
⑦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⑧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 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투자회사 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거래	(채권부분) ○ 선정주기: 분기 1회 ○ 평가자: 채권운용본부 내 각 팀장 ○ 평가기준: 리서치 20%, 거래능력 50%, 중개사리스크 15%, 중개수수료/기타 15% ○ 내용 - A그룹 2개사, B그룹 10개사를 선정 - A그룹에 분기약정의 6% 이상, B그룹에 분기약정의 2%~6% 거래 (주식부분) ○ 주문수행 능력 : 30% ○ 중개수수료율 : 30% ○ 재무안정성 : 20% ○ 백오피스 업무 : 20%
장내파생상품 거래	해당 사항 없음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회사의 추가 신주 발행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하므로 이 투자회사 주식을 매입한 주주가 추가로 이 투자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추가 설정 여부에 따라 매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1)일부환매

1. 주주는 보유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 현물보유주주에 대하여 회사는 정관 제 21 조 내지 제 23 조, 제 25 조 내지 제 27 조에 따라 그 주식을 환매하고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합니다.

2) 주식의 환매제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2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 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 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해산한 경우
3. 순자산액이 정관 제 9 조의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4. 결산일 직전 제 3 영업일 17 시경과 후부터 제 2 영업일 17 시 이전까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5.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3)주식의
환매연기

- ①정관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환매를 요구받은 회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주식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회사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
 - 가.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회사 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 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의 이익 또는 주주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
 - 가.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회사 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회사 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주주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의 1 또는 2 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원이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② 제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 ③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회사 주식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④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⑤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 ⑥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주주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1. 환매연기 주주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2. 환매연기 주주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회사는 환매연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제①, ⑤ ⑥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합니다.

4)주식의 부분환매

- ①회사는 회사 재산의 일부가 정관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제①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회사는 제②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이 회사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따라 별도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④회사는 제③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회사에 대하여는 정관 제 60 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주식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 ⑤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주주, 자산보관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1)분배금의 지급

- ①투자회사는 회사존립기간이 만료되거나 투자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회사 원본의 분배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 ②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분배금 등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투자회사가 정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회사재산인 자산으로 주주에게 분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투자회사는 투자회사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분배금 및 소멸시효

- ①.회사의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②제①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산분배금 및 청산분배금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 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우리투자증권빌딩 8층 02) 780-0300
회사연혁	1988.03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0.09 미국 SEC 투자자문업 등록 1995.02 LG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6.07 LG투자회사 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업종 전환 1997.04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5.06 우리자산운용 출범 LG투자회사 운용, 우리투자회사 운용 양사 합병. 자본금 491억 2005.09 자본금 감자(총 491억 => 333억) 2006.0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출범, Credit Suisse사와 합작

2. 주요 업무

1) 업무 범위

- 가. 투자회사 의 설정 및 해지
- 나. 투자회사 재산의 투자 및 운용지시
- 다.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업무
- 라. 투자자문 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2) 의무 및 책임

- 가.자산운용회사 의 의무**
- ①투자회사 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투자회사 의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주주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회사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③투자회사 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자산운용회사의 당해 투자회사 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나.자산운용회사 의 책임**
- ①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회사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 위탁

해당사항 없음.



3. 최근 2 사업

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항 목	05.03.31	06.03.31
유동자산	496	505
고정자산	113	187
자산총계	609	692
유동부채	20	46
고정부채	30	-
부채총계	50	46
자본금	300	333
자본잉여금	-	136
이익잉여금	259	318
자본조정	-	142
자본총계	559	646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항 목	05.03.31	06.03.31
영업수익	153	230
영업비용	81	122
영업이익	72	108
영업외수익	2	17
영업외비용	-	7
경상이익	74	118
특별이익	-	0
특별손실	-	0
세전순이익	74	118
당기순이익	51	84

4. 운용자산규모

구 분	운용규모 (단위 : 억좌)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상품	부동산	특별 자산	재 간접	실물 자산	합 계
2007.3월말 현재	12,561	12,869	28,858	79,750	18,117	3,397	1,000	1,131	-	157,683

5. 운용전문인력
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주요경력
최창훈	37	- 서울대학교 경제학 - 1997 한국수출입은행 - 1999 현대증권 - 1999 LG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1팀 - 현,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주식운용1팀 팀장
황아람	36	-연세대 경영학 석사 -한빛증권 기업분석팀 -LG 투자신탁운용주식운용 2 팀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투자전략팀 -현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주식운용 1 팀
현혜정	28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새마을금고연합회 자금운용본부 주식운용팀 -현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주식운용 1 팀

주1)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은 팀제에 의하여 운용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1. 운용전문
인력의 기타운용
현황

(2007.03.31.기준)

성명	운용 구분	운용펀드 수	운용자산(억원)
최창훈	공동	31	4,857
황아람			
현혜정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연혁
우리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02) 768-7000	www.wooriam.com	설립일 : 1969.1 지점수 :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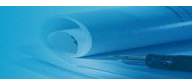
2. 주요업무

1) 판매회사의 업무 범위

- 가.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나. 수익증권 환매업무
- 다. 수익증권 교부업무
- 라.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마.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바.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 및 책임

- ①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 ②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판매행위준칙등

- ① 판매회사 및 판매 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나.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다.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라.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마.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다음의 행위

- 투자자에게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

-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간접투자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 그 밖에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인식, 투자목적, 재정 상태에 비추어 투자위험이 매우 큰 간접투자 증권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 판매회사가 금전의 대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금전의 대여를 조건으로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게 하거나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게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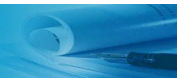
-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간접투자기구 또는 간접투자자에게 이익을 보전(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직원이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또는 고유재산의 운용업무를 겸직하게 하는 행위

- ② 판매회사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판매행위준칙(이하 "판매행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금융감독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⑤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⑥ 자산운용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 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III. 자산보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회사연혁	1991.7. 설립 1999.1. 통합 '하나은행' 출범 (충청은행/보람은행 합병) 2000.2 Allianz AG 전략적 제휴 체결 2002.12. 서울은행과 합병. 통합 '하나은행' 출범

2. 주요 업무

1) 업무 범위

- 가. 투자회사 재산의 보관 및 관리
- 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회사 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다. 자산운용회사의 투자회사 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주식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라. 자산운용회사의 투자회사 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가.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 ① 자산보관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투자회사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회사 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자산보관회사는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투자회사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자산보관회사는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투자회사정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나. 자산보관회사의 책임**
- ① 자산보관회사가 법령, 투자회사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자산보관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및 주소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연락처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www.woorisamu.com	02)2002-3000

-연혁

- 1) 설립일 : 1899.1. 30
- 2) 자본금 : 28,528 억원
- 3) 종업원수 : 10,224명

2. 주요 업무

1) 업무 범위

- 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재산을 평가
- 나. 이 투자회사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다. 산정된 기준가격의 자산운용회사에 통보
- 라. 기타 투자회사 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 업무

2) 의무 및 책임

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책임

- ①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법령, 투자회사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V. 채권평가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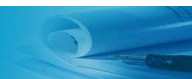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 소	연락처	연혁
한국채권평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 3215-1400	설립일 : 2000. 6. 20 자본금 : 30억원
KIS채권평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층	02) 399-3350	설립일 : 2000. 5. 29 자본금 : 50억원
NICE채권평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5층	02) 398-3900	설립일 : 2000. 6 .16 자본금 : 47.5억원

2. 주요 업무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회사 에게 제공합니다.

- 가.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할 것
- 나.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 다.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4부. 주주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권리

1. 주주총회, 이사회 및 의결권

가. 주주총회

1) 의결사항

- 가. 투자회사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회사의 존립기간, 투자회사 종류의 변경 등 투자회사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주식의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 다. 투자회사의 해산에 관한 사항
- 라. 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한 사항

2) 의결권

- ① 의결권은 주식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②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증권에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회의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주주는 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의결 방법

주주총회는 발행된 주식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주식 총좌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나. 이사회

1) 이사 현황

직명	성명	주요경력	소유 주식수	비고
법인이사	우리크레디트스 위스자산운용(주)	- 자세한내용은 '제 3 부 1.차 산운용 회사에 관한 사항'참조	1억주	발기 자금
감독이사				
감독이사				

**나.이사의
보수지급기준**

- (1)법인이사 보수 없음.
- (2)감독이사에 대한 보수에 관한 기준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회사 설립 후 최초의 감독이사에 대한 보수는 발기인 총회에서 정합니다.
- (3)회사의 발기인총회에서 정한 설립후 최초의 감독이사에 대한 보수는 월 30만원으로 합니다.

다.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합니다.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신주발행
- 3.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과의 업무위탁 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 4.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 5. 현금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 6.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7. 기타 법 등 관련 법령 및 투자회사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을 얻도록 정한 사항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①자산운용회사는 회사의 존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지체없이 자산보관회사로 하여금 투자회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 ②판매회사는 자산보관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회사가 정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회사 재산인 자산으로 주주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회사는 투자회사 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에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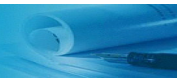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에 관한 사항**

- ①주주는 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주주에 관련된 투자회사 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나.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라.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 자산운용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 ①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회사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 회계감사인의 손해 배상책임

회계감사인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결과 중요한 사항을 회계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간접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 ①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②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주주의 주소지 또는 주주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주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투자회사정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http://www.amak.or.kr>),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인터넷 (<http://www.wcsam.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회사 의 설정현황
- 나.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현황과 주식의 기준가격표

다.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사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 나. 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 다. 투자회사의 해산

3)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인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대차대조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기준가격계산서
- 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4) 자산운용보고서

- ①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자산보관회사보고서

- ①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후 2월 이내에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자산보관회사가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보관회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1) 정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 ①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회사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투자회사정관에 따라 지체없이 자산보관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투자회사정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주주에의 통지
 - 나.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투자회사정관을 변경한 경우 : 정관 제 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이상 공고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회사정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회사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주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기간”이라 한다) 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정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주주가 투자회사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⑥ 정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2)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http://www.wcsam.com>·판매회사(판매회사 개요 참조) 및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가.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다.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라. 주주총회의 의결내용
- 마. 이 투자회사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회사정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바.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아.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3) 의결권 행사

- 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③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펀드명 : 우리CS 프런티어 알파 혼합 10 투자회사 제3호

판매일 : _____

판매회사 및 집포명 : _____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투자자 확인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